

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564
----------	------

2021년 9월 7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년 8월 10일, 김기대 의원 외 16명
- 나. 회부일자 : 2021년 8월 1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30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1년 9월 7일 상정·원안 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김기대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현재 지하철, 도로, 하수도 공사 등 공사구역내 원인자로 인해 발생하는 지장 상수도관을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닌 원인자가 자체적으로 이설하고 있으며, 상수도 분야의 경험이 부족한 원인자가 이설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시공 중 잦은 누수, 수질사고 발생 및 자재방치, 세척 불량 등 공사품질 저하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.
- 그리고 「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어문 규정

미준수 사항과 부정확한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음.

나. 주요골자

- 상수도사업본부가 원인자 이설공사를 직접 시행하기 위한 시설물 이설비용 (설계비, 시공비, 감리비, 가타 부대비용 등) 항목 추가(안 제3조제2항제10호 신설).
- 「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」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4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: 이재효)

가. 개요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 이설공사 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불편 초래 등을 방지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한 이설비용 항목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「수도법」 제71조에 따르면 수도시설 공사 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 비용을 부과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서는 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징수방법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.

「수도법」

제71조(원인자부담금)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(주택단지·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)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·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「수도법 시행령」

제65조(원인자부담금)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(주택단지·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)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.

② ~ ⑤ (생략)

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한편, 지하철, 도로, 하수도 등 다른 공사로 인해 이미 설치된 상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 등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공사구역 내 원인자가 자체적으로 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지만, 원인자의 전문성 및 관심 부족으로 인해 누수 및 수질사고, 인명피해 등이 매년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사고위험과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.

<최근 5년간 서울시 상수도 이설공사 현황>

항 목	총 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비 고
건 수	47건	3건	11건	10건	5건	18건	준공기준 추진사항
이설연장(m)	15,035	458	3,249	961	2,566	7,801	

<서울시 상수도 이설공사 주요 사고 현황>

		
마곡역 역사내 침수	상수도관 공사 중 작업자 1명 누수로 사망	
마곡역 지하차도 설치공사 ('20. 3)	여의도 지하보도 연장공사 ('19. 12)	대흥2구역 재개발 공사 ('18. 8)

- 따라서 외부 원인 제공으로 이설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원인자가 자체적으로 이설공사를 수행하기 보다는 상수도 관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수도 사업본부가 직접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차질 없는 수돗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, 안 제3조제2항제10호와 같이 원인자에게 시설물 이설 등의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- 다만, 직접 공사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며, 해당 지역에서 원인자나 관련 이해관계자 등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공사 지연과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,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“소요되는”을 각각 “드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단수된지역”을 “단수된 지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소요된”을 각각 “든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시설물 이설비용(설계비, 시공비, 감리비, 기타 부대비용 포함)

제4조제2항제4호 중 “따른다.다만”을 “따른다. 다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 중 “산정한다”를 “산정한다.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계산한다.다만”을 “계산한다. 다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건물에 대하여 는”을 “건물은”으로,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아니 된다”를 “안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아니하였으나”를 “않았으나”로, “아니 된다”를 “안된다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단서 중 “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”를 “긴급한 공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한다.다만”을 “한다. 다만”으로 하고, 단서 중 “비용에 대하여는”을 “비용은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한다.다만”을 “한다. 다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제1항의”를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”를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, “아니할”을 “않는”으로, “불복이 있는”을 “불복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”를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본문 중 “아니 된다”를 “안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설치중”을 “설치 중”으로, “단서 조항”을 “단서”로, “등에 대하여”를 “등에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비용에 대하여”를 “비용은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2항제1호 중 “제반조치”를 “모든 조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제8조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8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원인자부담금“(이하 “부담금”이라 한다)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<u>소요되는</u>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.</p> <p>가.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<u>소요되는</u>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(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)</p> <p>나.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·철거 등의 공사에 <u>소요되는</u>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</p> <p>다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드는</u> ----- -----.</p> <p>가. ----- ----- ----- <u>드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나. ----- ----- ----- <u>드는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3. “급수차의 사용경비”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지역에 급수차가 출동한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.

4. ~ 7. (생략)

제3조(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)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취·정수장, 배수지 및 송·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부담시키는 경우

2.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의 시설로써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

② 제2조제1호나목, 다목에 따른 수도 시설의 개조, 이설, 손괴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

1. ~ 9. (생략)

<신 설>

제4조(부담금 산정기준) ① (생략)

3. -----
--- 단수된 지역-----
-----.

4. ~ 7. (현행과 같음)

제3조(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) ① -----
-----.

1. -----

----- 든 -----

2. -----

----- 든 -----

② -----

---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시설물 이설비용(설계비, 시공비, 감리비, 기타 부대비용 포함)

제4조(부담금 산정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적용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도로복구비는 「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」에 따라 산출한 도로굴착복구단가 산정기준에 따른다.다만, 수도사업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 직접복구비는 도로굴착복구업체와 계약한 도로굴착복구단가로 산정한 금액과 재료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

5. ~ 7. (생략)

8.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

③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.다만,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해 줄 수 있다. 다만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소유주택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전액을 감면해 줄 수 있다.

1. ~ 2. (생략)

제5조(손피자 등의 의무)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

② 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
----- 따른다. 다만 -----

-----.

5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-----

----- 산정한다.

③ -----
----- 계산한다. 다만 -----
-----.

④ -----
----- 건물은 -----
----- 범위 -----

-----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손피자 등의 의무) ① -----

금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일시불로 징수하여야 한다. 다만, 규칙이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별도 징수할 수 있으며 분할 징수 시 별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제9조(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피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 요구 시 손피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손피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피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.

제10조(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원상복구비를 포함한 제3조제2항의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.

한다. 다만----- 비용은

제9조(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한다. 다만-----

③ -----
----- 고려하여 -----

제10조(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제1항-----

제11조(이의신청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기한 내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한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0조,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를 준용한다.

제15조(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) ①

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배수지 등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건축물·공작물과 공익 또는 시민 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등(건축물 제외)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시설물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

제11조(이의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제1항에 따른 -----

-----.

③ ----- 제2항에 따른 ----- 않는 -----
----- 불복하는 -----

-----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-

-----.

제15조(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) ① --

----- 안된다. -

-----.

② -----

----- 설치 중 -----

또는 제1항의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 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④ 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의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.

제17조(권한위임) ① (생략)

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.

1. 제6조에 따른 수도관리자의 의무와 제반조치
2. (생략)
3. 제8조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분할 징수
4. ~ 10. (생략)

----- 단서 -----

----- 등
에게 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 비용은 -----

-----.

제17조(권한위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1. -----
-- 모든 조치
2. (현행과 같음)
3. 제8조에 따른 -----
--
4. ~ 10. (현행과 같음)